특별기고

식목일 유래를 알고 꿈나무를 심자

정 기 연
주필

4월 5일은 제79회 식목일이다. 식목일은 국민식수(國民植樹)에 의한 애림 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제정된 날로서 나무를 심는 날이다. 이러한 국민식수 애림 운동은 1946년 제1회 식목일부터 국가시책으로 추진해 오늘날 우리나라는 벌거숭이산이 없어지고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식목일의 유래는 미국의 네브래스카주에서 산림이 헐벗은 것을 본 개척민이 산림 녹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주민 전체가 하루를 식수를 위한 봉사 일로 정한 것이 시초이다. 1872년 4월 10일 제1회 식목 행사를 해지고 이것이 그 후 미국 각주 및 캐나다에 보급됐고, 나아가 전 세계 각국에서 이를 본받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4월 5일 식목일 유래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 민족이 일본의 통치로부터 해방되면서 헐벗은 우리 강토에 나무를 심어야겠다는 절실한 요망이 국민의 의사로 집약됐다. 그리해 광복된 다음 해인 1946년 정부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룬 날(문무왕 17년 2월 25일: 양력 4월 5일)과 조선의 성종이 선농단에서 직접 논을 경작한 날(양력 4월 5일)을 기원으로 해서 식목일을 정했다.

이날은 청명과 한식날이 겹치거나 전후해 있음으로 조상에게 성묘하고, 주변의 산이나 들에 나무를 심었던 것이 유래가 됐다고 한다. 이처럼 식목일은 민족사적으로는 통일 성업을 완수하고 임금이 몸소 친 경의 성전을 거행한 날로써 농림사적으로도 매우 뜻있는 날일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도 나무 심기에 좋은 계절이기에 식목일을 4월 5일로 정하게 된 것이다.

제1회 식목일 행사는 1946년 4월 5일에 서울 사직공원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했었다. 식목일 행사는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 국민이 심고 가꾸는 국민식수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식목일은 1946년 제1회로 시작돼 1949년 4월 4일, 대통령령 124호로 4월 5일을 식목일로 공포했고,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해 이날을 공휴일로 정했다.

그 뒤 1960년에 3월 15일을 '사방(砂防)의 날'로 대체 지정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나 이듬해에 식목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해 식목일이 공휴일로 부활해 식목 행사를 했다. 그러나 2006년에 공휴일은 폐지되고 법정기념일이 됐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두 차례에 걸쳐 산림이 크게 훼손당한 일이 있다.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맞이한 뒤에 국가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은 틈을 타서 벌채 허가를 남발했고, 전국 방방곡곡에 즐비하게 서 있던 나무들이 훼손을 당해 장작과 숯으로 팔려 나갔다. 그리고 1950년에 일어난 6·25전쟁 중에 또 한 번 소중한 산림이 마구잡이로 훼손당했다.

다행히 근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녹화정책이 수립되고 연료가 무연탄과 천연가스와 석유로 바뀌어 가면서 산림이 보호되기 시작해 이제는 녹화정책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 그러나 아직도 함부로 산림을 훼손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유감이다. 부주의로 말미암은 산불 등으로 해마다 소실되는 수목도 적지 않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수종개량사업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푸른 숲 마을 가꾸기도 중요하므로 건물 주위에 심어 놓은 나무나 도로 주변과 공원에 심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뤄 가도록 가꾸는 정성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성은 일 년 내내 국민의 가슴속에 간직돼야 한다.

나무를 심는 것은 나의 꿈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나의 꿈이 이뤄짐과 같이 나무는 무성히 자라 재목이 되고 유실수는 열매를 맺어 가꾸는 자에게 보답하게 된다. 우리가 모두 나무를 심고 가꾸는 보람된 일에 앞장을 섰으면 한다. 나무를 심는 것은 연중 할 수 있으나 가장 적기가 3~4월이며 적지적수(適地適樹) 원칙에 따라 수종과 장소를 선택해 심어야 한다. 심는 나무의 수종은 꽃피고 열매 맺는 유실수를 심어서 가꾸는 보람을 느꼈으면 한다. 우리는 제79회 식목일을 전후해서 한 그루 이상의 꿈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보람 있는 일을 실천했으면 한다.

독자기고

아파트 화재 시 피난 행동요령

이 개 헌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우리나라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지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64%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아파트 가구 또한 꾸준히 증가해 전체 가구 중 52.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아파트 화재 또한 꾸준한 증가추세이며, 최근 3년간 통계에 따르면 8천 426건 발생해 사망 110명 등 1천 1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부분 발화 층으로 연소 범위가 국한되며, 다수 층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비율은 제한적으로 나타나 발화 층과 거리가 있을 시 무리한 대피보다 실내 대기 및 구조요청 등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1992년 공동주택 내 세대 간 경계벽 경량 구조(경량 칸막이)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 확장형 아파트 등은 대피 공간이 설치돼 있다.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에 석고보드 등의 재질로 만들어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쉽게 파괴 후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 통로의 역할을 하며, 대피 공간은 내화구조로 만들어져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피해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이다.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는 무조건 대피보다 먼저 화재가 발생한 위치를 파악한 후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화재 상황 및 피난 여건에 따라 판단해 행동해야 한다.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난 경우에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만약 대피가 어려운 경우 젖은 수건을 이용 틈새를 막아 화염과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세대 내 대피 공간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염과 연기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창문을 닫고 젖은 수건을 이용해 틈새를 막아 화염과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다른 곳 화재로 세대 내 화염, 연기가 유입된다면 대피가 가능한 경우 대피하며, 대피가 어려운 경우 세대 내에서 두 번째 조치 사항을 참고해 침착하게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또한 대피 공간 및 경량 칸막이 부근에는 물건 적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법 등을 평소에 숙지한다면 초기화재시 나와 가족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안전까지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수사일보
http://www.susai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사 장 이문수
발행·편집인 이가영
부 사 장 기백관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서울지사본부 (우)05385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58번길 16-12 102호
전북지사본부 (우)5592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 연천2길 69-1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